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민경환, 정운숙, 권광택, 박종갑, 이규완, 이대원, 이영복, 이필용,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연만흠, 이종호, 조영재, 김화수, 최미애, 장주식, 임 현, 한창동, 이언구, 심홍섭 (21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06년 12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월 13일

3. 제안이유

지역간 재정격차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 제도를 도입하고, 그간의 행정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설

(1) 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안 제6조)

(2) 보조금의 예산요구(안 제7조)

- (3) 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안 제8조)
- (4) 보조금 예산의 통지(안 제10조)
- (5) 의무부담(안 제11조)
- (6) 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등(안 제13조)

나.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안 제9조)

5. 검토의견

가. 배경 및 주요내용

현행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변화된 행정 및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안 제9조의 차등보조율제도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음.

개정조례안중 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4조 보조대상, 안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안 제16조 교부방법, 안 제17조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안 제18조 용도의 사용금지, 안 제19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안 제2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안 제21조 사업비 정산 검사, 안 제22조 감독, 안 제24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는 내용에 변동이 없으며,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보조신청, 안 제14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안 제1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안 제23조 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는 부분삭제 또는 추가삽입을 통해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설한 내용으로는

- 안 제6조 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 안 제7조 보조금의 예산요구
- 안 제8조 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 안 제9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 안 제10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안 제11조 의무부담
- 안 제13조 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등
- 안 제25조 시행규칙으로 8개 조문이 신설되었음

이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차등보조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됨.

나. 차등보조율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차등보조율 제도는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하보조율을,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²⁾ 적용에 대하여는 보조금은 재정격차 완화의 목적보다는 일정한 행정수준 유지를 위해 특정사업의 장려를 목적으로

2) 중앙정부에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10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되다가 1994년 이후 중단된 바 있음.

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와 불균형 문제는 보조금보다는 지방교부세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보전금과 같은 지방재정지원제도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재정력이 낮아 지방비 부담 능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특정 보조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보조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차등보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시·도비보조금³⁾에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다. 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안 제8조)과 차등보조를 적용산식(별표)에 대한 검토의견

안 제8조에서 시·군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기준부담률을 정하고 있는 동 규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의 차등보조율 적용산식중 재정자주도 산식에는 도에서 교부하여 시·군에서 일반재원으로 쓰이는 재정보전금을 삽입하여 산식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함.

3)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가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붙임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고자료 I]

보조금 현황 및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구분	도비보조금				재정자립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합 계	64,186	100.0	52,942	100.0	-	-
청주시	7,288	11.4	7,040	13.3	47.4	48.1
충주시	7,045	11.0	6,061	11.4	20.7	20.8
제천시	7,291	11.4	5,272	10.0	20.6	20.0
청원군	7,671	12.0	6,558	12.4	28.1	30.1
보은군	5,825	9.1	4,129	7.8	9.8	11.8
옥천군	5,293	8.2	3,703	7.0	13.9	15.4
영동군	4,388	6.8	5,163	9.7	13.3	15.3
증평군	1,556	2.4	1,455	2.7	11.6	17.0
진천군	3,421	5.3	4,532	8.6	27.0	28.6
괴산군	5,316	8.3	3,059	5.8	14.4	12.4
음성군	6,116	9.5	4,138	7.8	21.6	24.8
단양군	2,976	4.6	1,832	3.5	19.4	20.9

자료) 예산담당관실

[참고자료 2]

주요재정지표 산출방식

각종지표	산 출 방 식	비 고
재정자립도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재정자주도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보통교부세+재정보전금
경상비 비율	$\frac{\text{경상예산}}{\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경상예산=인건비 +경상적경비
투자비 비율	$\frac{\text{사업예산}}{\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
예비비확보율	$\frac{\text{예 비 비}}{\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주민 1인당 자치수입액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인 구 수}} \times 100$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frac{\text{지방세액}}{\text{인 구 수}} \times 100$	
자체수입대 인건비비교	$\frac{\text{지방세액}}{\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times 100$	

관계법령 발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第5條 (豫算計上의 申請이 없는 補助事業에 대한 예외조치) 國家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の 豫算計上 申請이 없는 補助事業의 경우에도 國家施策遂行上 부득이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補助金을 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第6條 (中央官署의 長의 補助金の 豫算要求) ①中央官署의 長은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申請받은 補助金の 內譯 및 金額을 調整하여 企劃豫算處長官에게 補助金の 豫算要求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事業의 경우에는 補助金の 豫算計上申請이 없더라도 그 補助金の 豫算要求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 第1項의 경우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事業중 대부분의 地方自治團體와 관련된 補助事業에 대하여는 地方自治團體別 內譯없이 總額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中央官署의 長이 補助金の 豫算要求를 할 때에는 企劃豫算處長官이 관계資料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補助事業에 대하여는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의 豫算計上申請內譯과 中央官署의 長의 調整內譯 및 기타 필요한 資料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第9條 (補助金の 對象事業·基準補助率등) 補助金이 支給되는 對象事業·經費의 種目·國庫補助率 및 金額은 매년 豫算으로 정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에 있어서는 補助金이 支給되는 對象事業의 범위와 補助金の 豫算計上申請 및 豫算編成에 있어서 補助事業別로 適用하는

基準이 되는 國庫補助率(이하 "基準補助率"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差等補助率의 適用) ①企劃豫算處長官은 매년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豫算을 編成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補助事業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財政事情을 감안하여 基準補助率에 一定率을 加減하는 差等補助率을 適用할 수 있다. 이 경우 基準補助率에 一定率을 差減하는 差等補助率은 地方交付稅法에 의한 普通交付稅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地方自治團體에 한하여 適用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第1項의 差等補助率과 그 適用對象이 되는 地方自治團體의 범위 및 適用基準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補助金豫算의 통지) ①中央官署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補助金豫算案을 事業別로 해당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에게 당해 會計年度의 前年度 10月 15日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國會에서 豫算이 審議·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內譯을 事業別로 즉시 해당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中央官署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에 있어서는 企劃豫算處長官과 行政自治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③第1項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가 市長·郡守인 경우에는 당해 市·郡을 관할하는 道知事에게一括하여 통지할 수 있다.

第13條 (地方費 負擔義務)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國家補助事業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費負擔額을 다른 事業에 우선하여 當該年度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16條 (補助金の 交付申請) 補助金の 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事業의 目的과 내용, 補助事業에 소요되는

經費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에 中央官署의 長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中央官署의 長이 지정한 期日내에 中央官署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예산**계상)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1.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개정 1996.12.31, 1998.2.28, 1999.5.24>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도·시 및 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별표 2] <개정 1994.12.23, 1996.12.31, 1998.2.28, 2000.12.29>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관련)

1. 인상보조율의 적용기준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나타내는 지표, 보조사업의 해당지역에 있어서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	<p>①산식 : $\frac{\text{지방세수입} + \text{경상적세외수입}}{\text{공무원인건비}}$</p> <p>②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세입예산과목 분류상의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사업장생산수입·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무원인건비는 일반회계세출예산과목 분류상의 급여·상여금·기타직보수·정액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p>
(2) 재정력지수	<p>①산식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p> <p>②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을 말한다.</p> <p>③자료는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에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자료를 사용한다.</p>
(3) 기본적세출소요비중	<p>①산식 : $\frac{\text{경상적경비} + \text{채무상환경비}}{\text{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times 100\%$</p> <p>②경상적경비는 일반회계세출예산과목 분류상의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및 관서당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채무상환경비는 국내차입금상환·해외차입금상환·예수금상환·전대차관상환경비의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p> <p>③자료는 당해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의 기본적 세출소요비중과 전년도의 당초 예산상의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의 평균치를 사용한다.</p>

2. 인하보조율의 적용기준

적용대상지방자치단체	인하보조율
특별시	기준 보조율에서 20%를 차감한다.
광역시	기준 보조율에서 15%를 차감한다.
도·시·군	기준 보조율에서 10%를 차감한다.